

# 감 사 위 원 회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한강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

**관 계 기 관** 한강사업본부

**내 용**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4항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(영업의 종류) 제8호, 제25조(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) 제1항 제8호, 2018년도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「공유재산 유상 사용·수익 허가서」 제31조 제1항 및 한강공원 난지 및 양화물놀이장 「공유재산 유상 사용·수익 허가서」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,

분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판매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, 휴게음식점 신고 등 판매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아울러, 2018년도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「공유재산 유상 사용·수익허가서」 제10조에 따르면,

사용자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수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도, 현장 점검시 ①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등 한강 야외수영장 3개소의 휴게음식점에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식류를 조리·판매하였으며, ② 잠원수영장 수탁운영자((주)아뮤즈)는 수영장 내에 판매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중 1개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.

[표 1] 한강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현황

연번	시설명	관리부서(수탁기관)	수영장 운영기간	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현황
1	한강공원 잠원수영장	한강사업본부 (◆◆◆)	'18.6.19~9.14	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, 수영장 내 판매시설 재임대
2	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	한강사업본부 (●●●)	'18.6.25~9.14	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
3	한강공원 양화물놀이장	한강사업본부 (●●●)	'18.6.25~9.14	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

## 조치할 사항

한강사업본부장은, 수영장 수탁자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내 판매시설에서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할 시 「식품위생법」 관련규정 따라 영업신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,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‘공유재산 유상 사용·수익 허가서’ 규정에 따라 수영장 내 판매시설 재임대 행위 등에 대한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주의요구)